

自然休養林에 대한 小考

본고는 지난 2000. 11. 24. 산림청 주관으로 성수자연 휴양림에서 자연 휴양림 담당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편집자 -

김 한 태 / 본회 회장

1. 序 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休養林을 專擔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休養林에 모시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더구나 불초한 이 사람이 전문가인 여러분 앞에 저의 그 동안의 經驗談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機會까지 주신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專門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만큼 전문가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國有林의 休養林을 담당하신 까닭에 우리 私設自然休養林하고는 여러 가지로 經營上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私設休養林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나는 休養林을 하기 전에는 40여년 간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篤林家입니다. 지

난 40여년간 나의 인생 전성시기에 온갖 정력을 쏟아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까닭에 篤林家 칭호도 얻고, UN의 FAO로부터 UN상도 받았으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무 할아버지”라는 칭호로 登載되는 등의 榮光도 안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나무만 심고 가꾸어도 國土도 綠化되고 所得도 높일 수 있다는 信念과 期待와 哲學 속에 1석 3조의 비전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林業은 競爭力이 弱化되어 비교우위(比較優位)에서 멀리 밀려났고, 競爭力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는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山林廳當局은 이를 극복해 주기 위하여 여러 면에서 物心兩面으로 지원책을 써 오고는 있지만 이미 市場競爭에서 멀리 밀려난 우리 林業은 限界點에 부딪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돌파구

(突破口)가 되지 않을까 하여 啓發된 것이 自然休養林制度의 導入입니다. 이 制度는 먼저 國有林으로부터 先導되어 왔고, 私有林에게까지 普及·擴大 傳破되었습니다. 이것은 時代的인 必然的 導入이요, 流入이긴 하지만 그동안 山林所得展望이 불투명(不透明)해진 時点에서, 篤林家들에겐 하나의 希望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篤林家 山主들이 이에서 突破口를 찾고자 自然休養林業에着手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직접 國有林에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經驗을 해 보셨겠지만 당초 期待했던 것과는 差異가 많습니다. 國有 또는 地方自治團體 休養林은 人件費 등 經常費가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이기 때문에 經營上에 어려움이 덜 하지만, 우리들 私設休養林에서는 이 人件費등 經常費가 크게 부담으로 作用하므로서 經常赤字가 加重되고 있는 것입니다.

本人이 生覺하기에는 國有休養林에서도 黑字經營休養林은 한두 個所에 不過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私設休養林에서는 가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私有林休養林에서는 거의 100%가 赤字에 허덕이고 있고, 倒產되었거나, 倒產 直前危機에 놓인 私有林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資本主義 國家社會에서 自己投資에 대한 怨望을 누구에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는

當局의 正確한 未來 展望의 判断이 없는 가운데 성급히 私有林에게도 권장(勸獎)한當局의 政策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最近山主들은 나무 심어 한번 속고, 休養林해서 두 번 속았다는 流行語가 創造되었습니다.當局에서도 私有林에 대한 歷史가 일천(日淺)하다보니 어떤 經營 노하우(know-how)가 없는 狀態에서 너무 성급히 私有林에게도 권장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所感입니다.

이는 先進外國이나 가까운 日本의 例에서 보다시피 私有林休養林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私有林休養林을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하다보니 당초의 自然休養林으로서의 본래의 취지를 維持하기에는 限界에 와 있고, 이에 收支를 맞추기 위한 各種 位략 시설을 許容하다보니 당초의 自然休養林의 목적과 취지는 많이 退色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私有林에 많은 利用客을 誘致하기 위하여서는 私設休養林으로서는 不可避한 措置일 수밖에 없다고 生覺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몇 년동안의 經驗을 토대로 한 몇가지 基本原則을 列舉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休養客이 誘致되고 收支를 맞출 수 있다고 生覺하는 바입니다.

2. 休養林이 갖추어야 할 必要充分條件

우선 休養客을 많이 誘致하는 것이 基本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

하여는 다음 세가지 基本條件이 具備되어야 합니다.

첫째: 불거리가 充分하여야 합니다.

이 불거리는 自然景觀을 意味합니다. 人工이 加味되지 않는 天然의인 빼어난 景觀이 좋은 곳이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位置選定이 重要합니다.

둘째: 먹거리입니다.

옛부터 금강산도 食後景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景致가 빼어나도 최소 몇 시간을 利用하다보면 最小限 食事 한끼는 먹고 가게 되는 것이 常例입니다. 質 좋은 분위기 있고 운치 있는, 좋은 施設 속의 맛있는 飲食이 提供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놀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景致 좋은 곳에서 맛있게 먹으면 다음은 재미있는 놀이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놀이시설이 있어 흥미를 돋구어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印象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自然休養林內에 施設許容이 限界가 있으나 간단한 놀이기구를 자꾸 開發하여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불거리와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번 왔던 사람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 등 動物을 이용한 쇼(show)프로그램 開發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數年前에 “싱가포르”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주릉지” 공원인가 하는 곳에서 새가 쇼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처음 갔을때는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좁은 땅의 나라에서는 다른 自然景觀을 利用한 프로그램은 開發에 限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人工的인 불거리의 하나로 새 쇼를 개발한 것입니다. 새 쇼 한 가지만으로도 觀光상품은 充分합니다. 그래서 한번 왔던 사람도 다시 찾게 하는 戰略입니다.

넷째: 질 좋은 서비스입니다.

全 從業員에게는 첫째도 親切, 둘째도 親切, 셋째도 親切이라는 教育을 恒時시켜서 한번 온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사람을 待同하고 다시 찾아오는 程度라야 합니다. 卽 弘報의 波及效果를 期하는 것입니다.

이 親切속에는 물론 清潔도 包含됩니다. 休養林內 모든 곳이 깨끗해야 함은 물론, 숙박의 경우 침실, 침구, 화장실의 깨끗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國有休養林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國有林의 경우에는 실제 이용객과 접하는 사람은 下位職 公務員 또는 公益勤務要員들이고 時間制로 勤務하는 까닭에 자칫하면 使命感과 責任感에서 親切과 清潔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以上 네 가지 基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自然休養林인 까닭에 施設에 制約을 받을 수 있는 事項도 있습니다만 결론으로 다음 몇 가지 事項을 提示하고 이를 改善해 나가야 된다고 生覺합니다.

3. 앞으로의 改善点

이 問題는 國有休養林에서는 適用 對象이 아니고 私有休養林에서만 該當되는 事項입니다. 앞서 言及하였지만 기왕에 施設이 된 休養林에 對하여서는 어떠한 形態라도 倒産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私有休養林 新規許可是 可及的 억제하고 新規施設에 國庫補助나 融資 등一切의 支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新規施設에 政府가 支援을 하면 오히려 政府가 赤字業體를 量產해 내는 結果를 招來합니다. 그만한 財源이 있다면 기왕의 既存의 業體에 既往에 實施하고 있는 運營資金融資를 擴大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自然休養林業이 產業業種分類上 “서비스”業種으로 分類되어 稅制上의 不利益은 물론, 一般 市中銀行 貸出에 制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년전 언젠가 이를 우리 協會 建議에 따라 山林廳에서도 統計廳과의 協議로 休養林業種으로 獨立을 시켜놓았으나 그것은 코드번호 分類가 小分類內에서

만 獨立되었을뿐 서비스業이라는 大分類 속에서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선 稅務行政에서 認定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自然休養林業은 일반 서비스 業種과는 당연히 分類되어야 합니다.

셋째：앞서 休養林이 갖추어야 할 必要充分條件에서 食事에 관한 問題를 言及했습니까만 質 좋은 食사를 提供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自然休養林 造成 및 管理 運用 指針에 따른 食品衛生法 規定에 의한 간이휴게음식점으로는 간단한 음료수 정도밖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宿泊이 허용된 이상 또 수십명씩의 團體를 맞이하기 위하여는 일반요식업의 食堂施設이 許容되어야 합니다. 수십여명이 단체로 와서 각자 취사작업을 하기도 어려우려니와 쓰레기 淨化 처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自然休養林에 宿泊施設利用등에 관하여 文化觀光振興促進法에 의한 일반 「콘도」시설 이용과 같이 “會員制” 使用이 可能하도록 關係部處와 協議 改定토록 하여야 합니다.

以上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多角的으로 研究檢討하여 政策的인 뒷받침을 통하여 私設休養林의 起死回生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以上 말씀드린 事項은 모두 私設休養林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國有林休養林 또는 地方自治團體休養林을 專擔하던 여러분께서는 參考로 하시고 私設休養林의 어려운 점을 理解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시지 마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오늘 시설도 不便한 저의 休養林에 오셔서 이러한 時間을 갖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며 不足한 点이 많지만 즐거운 時間을 갖도록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